

25애니메이션제작지원(독립-단편/중편, 극장용-장편 1단계/2단계) 공고문

사업개요		<p>○ 사업명 : 25독립극장용애니메이션제작지원 * e나라도움 내 공고 검색명</p> <p>○ 사업목적 : 독립/극장용 애니메이션 지원을 통한 예술적 가치 확보 및 다양성 확대</p> <p>○ 사업기간(협약기간) : 7개월 내외</p>				
지원내용						
No	구분	내용				
1	지원 규모	구분		최대지원금	지원과제(예정)	지원예산
		독립 단편	구분 별 중복 접수 불가 * 1개 수행기관 당 구분 별 1개 기획안만 공모 참여 가능	40백만원	12	480백만원
		독립 중편		100백만원	4	400백만원
		극장용 장편 (1단계)	구분 별 중복 접수 불가 * 1개 수행기관 당 구분 별 1개 기획안만 공모 참여 가능	150백만원	2	300백만원
		극장용 장편 (2단계)		500백만원	2	1,000백만원
소계			20개 내외	2,180백만원		
		* 독립(단편/중편)분야와 극장용 장편(1단계/2단계)분야에서 각 분야 당 1개 업체 1개 과제 지원가능 (단, 동일과제로 중복지원 불가)				
2	지원 대상	○ 국산 애니메이션을 기획 및 창·제작하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p>【애니메이션업 신고증 발급 안내】</p> <p><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p> <p>①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p> <p>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p>				
		독립 단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지원 가능	독립 중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지원 가능	
		극장용 장편 (1단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지원 가능	극장용 장편 (2단계)	법인사업자만 지원 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은 애니메이션사업자 사업자등록 필수이나 참여기관은 해당 없음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은 최대 1개 기관까지 가능				
		*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지원 가능,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당해연도 동시 수행가능 과제 수 최대 2개 제한				
3	지원 자격	공통사항	① IP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② 접수 마감일 기준 국내외 방영이 50% 미만인 프로젝트 ③ 광고, 홍보, 파일럿 영상, 졸업작품 등은 지원대상 제외 (영화제 출품, 상업용도 등으로 활용 가능)			
		독립 단편	협약기간 내 완료된 이야기 구조의 신규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5분 이상)이 제작될 수 있는 프로젝트			
		독립 중편	초기 기획단계(시나리오 및 애니메틱스)를 마쳤으며, 협약기간 내 상영시간 20분 이상 애니메이션이 제작될 수 있는 프로젝트			
		극장용 장편	TV 시리즈 용으로 개발 완료되지 않은 예술성 창의성 중심의 극장용 창작 장편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4	지원 시 제출물	독립 단편	① 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평가자료 일체			
		독립 중편	① 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평가자료 일체, ② 시나리오 완본 ③ 애니메틱스 20분 이상			
		극장용 장편 (1단계)	① 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평가자료 일체, ② 시나리오 완본, ③ (선택) 1분내외 트레일러			
		극장용 장편 (2단계)	① 신청서, 수행계획서 등 평가자료 일체, ② 시나리오 완본, ③ 애니메틱스 15분 이상			

No	구분	장편	단편																	
5	지원 프로젝트 산출 결과물 최소기준	독립 단편	5분 이상의 완결된 이야기 구조를 가진 단편 애니메이션																	
		독립 중편	20분 이상의 완결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중편 애니메이션																	
		극장용 장편 (1단계)	40분 이상 애니메이션																	
		극장용 장편 (2단계)	40분 이상의 완결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장편 애니메이션																	
<p>※ 협약기간 내 과제수행 결과물을 제작해야하며 제작 결과물은 편집이 완료되어야 함</p> <p>※ 제작 결과물 영상 분량은 인트로 및 엔딩(크레딧)을 제외하고 산정함</p> <p>※ 경쟁력 있는 전략콘텐츠 발굴을 위해 총 지원규모 내 분야별 지원작 수 및 지원액은 조정될 수 있음</p> <p>※ 협약기간(협약시작일, 협약종료일)은 사업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음</p>																				
6	총사업비 구성 및 사업자부담금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자기부담금 의무 [예시] 총사업비 100원 = 지원금 90원 + 자기부담금 10원 * 지원금이 아닌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10% 이상을 유의 [검증방법] 자기부담금 ≥ (지원금 / 9) * 자기부담금은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 불인정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기부담금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독립 단편만 해당	자기부담금 면제 조건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할 경우) ① 지원금 5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②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하 사업자																	
<p>【자기부담금 유의사항】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17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7	사업비 활용 범위	①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내부인력, 회사대표 및 수행 책임자 인건비 편성 가능(국고 및 자부담금)																		
		국고 지원금 대표자(수행책임자) 인건비 편성 조건	① 독립 단편, 독립 중편, 극장용 장편 1단계만 한정(극장용 2단계는 불가)하고 ② 협약일 기준 법인사업자인 경우 편성가능(2개 조건 모두 충족)																	
		참고	○ 개인사업자 자격으로는 대표자 인건비 책정이 불가하므로 대표자 인건비 편성을 희망할 경우 법인사업자 전환하여야 함																	
<p>② 협약 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하며, 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직고용 인력 (신입/경력, 프로젝트 참여기간)에 한해 참여 비율로 편성 가능</p> <p>③ 작품 제작비(임차료, 일반용역비, 일반수용비) 등 편성 가능</p>																				
<p>【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시 유의사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th> <th colspan="3">인건비(*)</th> </tr> <tr> <th>대표자/수행책임자</th> <th>직접인력(**)</th> <th>간접인력(***)</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총 사업비</td> <td>지원금</td> <td>편성 가능 (극장용 장편 조예 불가) (개인사업자 불가)</td> <td>편성 가능</td> <td>편성 불가능</td> </tr> <tr> <td>자기부담금</td> <td>편성 가능</td> <td>편성 가능</td> <td>편성 불가능</td> </tr> </tbody> </table> <p>* 인건비 내 4대 보험료 지원금 편성 가능(업체부담금 제외) ** 직접인력이란 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직고용 인력(정규, 계약(상용)) *** 간접인력이란 회계, 행정, 경영지원, 영업, 마케팅 등 작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력</p>						인건비(*)			대표자/수행책임자	직접인력(**)	간접인력(***)	총 사업비	지원금	편성 가능 (극장용 장편 조예 불가) (개인사업자 불가)	편성 가능	편성 불가능	자기부담금	편성 가능	편성 가능	편성 불가능
		인건비(*)																		
		대표자/수행책임자	직접인력(**)	간접인력(***)																
총 사업비	지원금	편성 가능 (극장용 장편 조예 불가) (개인사업자 불가)	편성 가능	편성 불가능																
	자기부담금	편성 가능	편성 가능	편성 불가능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02.20.(목) - 2025.03.07.(금) 15:00
○ 접수기간 : 2025.02.20.(목) - 2025.03.07.(금) 15:00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 시간 기준)
* 접수기간 외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하니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에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평가자료를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통해 접수
- * 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이메일 등 e나라도움을 제외한 신청서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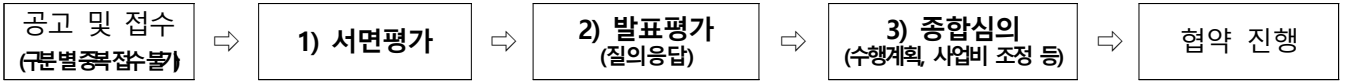
【평가자료 제출 유의사항】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명은 「25독립애니메이션_독립단편/독립중편/극장용장편1단계/극장용장편2단계_e나라도움접수번호_주관기관명.」 형태로 기입(독립단편/독립중편/극장용장편1단계/극장용장편2단계 중 택1)
-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에 제출
(파일명 : 독립단편/독립중편/극장용장편1단계/극장용장편2단계_e나라도움접수번호_주관기관명.zip)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 첨부파일 50MB 이상 시, 업로드 불가
-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분	양식	평가자료	비고					
필수	지정양식	① 사업신청서	날인 必					
		② 수행계획서						
		③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④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⑥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자율양식 (독립 중편, 극장용 장편 1,2단계 해당)	<table border="1"> <tr> <td>독립 중편</td> <td>① 시나리오(스크립트) 완본 ② 애니메틱스 20분 이상</td> </tr> <tr> <td>극장용 장편 (1단계)</td> <td>① 시나리오(스크립트) 완본 ② (선택) 1분내외 트레일러</td> </tr> <tr> <td>극장용 장편 (2단계)</td> <td>① 시나리오(스크립트) 완본 ② 애니메틱스 15분 이상</td> </tr> </table> <p>* 분량 준수 必 영상물은 신청서에 URL 기재 * 희망 시 선택적으로 스토리, 비주얼 평가자료 추가 제출 가능</p>	독립 중편	① 시나리오(스크립트) 완본 ② 애니메틱스 20분 이상	극장용 장편 (1단계)	① 시나리오(스크립트) 완본 ② (선택) 1분내외 트레일러	극장용 장편 (2단계)	① 시나리오(스크립트) 완본 ② 애니메틱스 15분 이상
독립 중편	① 시나리오(스크립트) 완본 ② 애니메틱스 20분 이상							
극장용 장편 (1단계)	① 시나리오(스크립트) 완본 ② (선택) 1분내외 트레일러							
극장용 장편 (2단계)	① 시나리오(스크립트) 완본 ② 애니메틱스 15분 이상							
발급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컨소시엄 시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제출						
	⑨ 애니메이션사업자 신고증	주관기관만 제출						
선택	지정양식	⑩ 콘진원 주요행사 또는 시상식 수상작 사용 권리 확인서	해당 시 필수제출					
	자율양식	⑪ 콘진원 주요행사 또는 시상식 수상작 사용 권리 계약서						
		⑫ 배경 디자인 등 기타 비주얼 자료						
		⑬ 국내외 마케팅 계획, 부가사업 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⑭ 저작권, 배급 및 해외투자계약서, 해외공동제작계약서, 해외유통/배급계약서 계약서						
⑮ 지역근무확인서와 표준계약확인서 등 기타(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								
서면평가 통과한 발표평가 대상에게 추가 안내	① 기업신용평가 조회를 위한 서류	해당 시 필수제출						
	②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증빙							
	③ 참여인력 지역 근무 확인서류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안내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제출 방법 추후 안내

※ [독립(단편, 중편)]/ [극장용(장편 1단계, 장편 2단계)] 구분 별 1개 기획안만 공모 참여 가능하며, 중복 불가

1) 서면평가

- 평가방법 : 접수 완료한 과제 대상으로 서면평가 진행

- 점수산출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상위 2배수 내외에 한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지원규모 2배수 이내로 접수될 경우, 서면평가를 겸한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평가기준 적용 예정 (종합점수는 서면평가 가중치 미적용하여 발표평가 점수와 동일한 것으로 같음)

【독립 단편/중편 - 1차 서면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과제기획력 (30점)	기획 독창성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20
	기획 완성도	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10
과제내용 (35점)	작품성(예술성)	독립 애니메이션으로서 작품 자체가 갖는 예술적 가치 확보 여부	20
	독창성	작품 내용은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15
수행기관 (1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5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5
참여인력 (15점)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애니메이션 제작) 수행경험 여부	15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5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5
합 계			100
가산점(최대 3점)		직전 3개년('22~'24년) 콘진원 주요행사 또는 시상식 수상작 : 3점 (해당 IP로 지원 신청 시 / 대상 행사 및 시상식 명단 별도 기재)	3

【극장용 장편 - 1차 서면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과제기획력 (30점)	기획 독창성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	10
	과제 이해도	목표 시장 및 과제 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10
	기획 완성도	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10
과제내용 (35점)	작품성(예술성)	작품 자체가 갖는 예술적 가치 확보 여부	15
	독창성	작품 내용은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10
	완성도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협약기간 내 제작완성 가능성)	10
수행기관 (1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5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5
참여인력 (15점)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애니메이션 제작) 수행경험 여부	15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5
	사업비 조달계획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5
합 계			100
가산점		직전 3개년('22~'24년) 콘진원 주요행사 또는 시상식 수상작 : 3점 (해당 IP로 지원 신청 시 / 대상 행사 및 시상식 명단 별도 기재)	3

【서면평가 가산점 안내】

- 적용범위 : 직전 3개년('22~'24년) 콘진원 주요행사 또는 시상식 수상작
- 가점적용 : 수상작 IP(해당 시, 수상작 기업)로 지원사업 신청 시 서면평가 가점 3점 부여
*제출물 내 증빙 자료 첨부하여야 함
- 대상 행사 및 시상식 명단(상세 명단_25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안내페이지 가점대상 찾아보기)

구분	분야	대회명	가점 3점 부여 범위
1	애니	대한민국콘텐츠대상_애니 부문	대통령상 문체부 장관상 콘진원 원장상
2	캐릭터	대한민국콘텐츠대상_캐릭터 부문	
3	만화	대한민국콘텐츠대상_만화 부문	
4	스토리	대한민국콘텐츠대상_스토리 부문	
5	투자/금융	케이녹(KNock) 데모데이(수상작 기업)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혁신상
		스타트업콘 배틀필드(수상작 기업)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6	방송	뉴미디어 콘텐츠상(작품상)	대상, 우수상
7	게임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글로벌 인디 게임제작 경진 대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2) 발표평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통과한 과제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질의응답 포함)
- 점수산출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과제 종합심의 대상 선정

【발표평가 계량점수 안내】

- 제출대상 : 발표평가 대상자(*서면평가 이후 안내)
- 계량점수 1) 수행기관(재무건전성 5점)
 - 발표평가 참여자 대상 신용조사 진행 예정으로 <신용조사 정보등록>안내에 따라 기한 내 서류 제출
 - 미제출 또는 등록 지연 시 발표평가 참여 불가
 - 주관기관 기준으로 발표평가 시 5점 한도 내 배점 적용
 - AAA~BBB 5점, BB~B 3점, CCC 1점, CC ~ NR 0점
- 계량점수 2) ESG(일자리 창출 2점, 지역기업 3점, 표준계약서 1점)
 - 일자리 창출 :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지정양식) 제출 시 2점, 미제출시 0점
 - 지역기업 : 지역기업 기준 조건 확인서(지정양식) 제출 시 3점, 미제출시 0점
 -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서(지정양식) 제출시 1점, 미제출시 0점

【독립 단편/중편 - 2차 발표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과제기획력 (30점)	기획 독창성	작품 컨셉, 스토리의 완결성 등 독립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차별성과 참신성	15
	기획 완성도	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15
과제내용 (20점)	작품성(예술성)	독립 애니메이션으로서 작품 자체가 갖는 예술적 가치 확보 여부	10
	독창성	작품 내용이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10
기대성과 (20점)	후속발전가능성	작품 완성 이후 구체적인 활용(배급 및 유통) 계획 존재여부 등 발전가능성	10
	공모전 수상성과	국내외 영화제, 공모전 등 수상 가능성	10
수행기관 (14점)	추진의지 및 역량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	9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정보 조회 결과	5
참여인력 (10점)	참여인력 참여율	과제에 적절한 인력구성 여부와 참여율 적정성	5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애니메이션 제작) 수행경험 여부	5
ESG (6점)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2
	지역기업(계량)	주관기관 지역기업 여부(본사 기준) ※ 신청일 ~ 협약종료까지 주관기관의 참여인력(인건비 편성인력) 중 30% 이상이 지역 소재 본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부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3점	3
	표준계약서(계량)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제출 1점, 미제출 0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최근 3년간): 제출 1점, 미제출 0점	1
합 계			100

【극장용 장편 - 2차 발표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과제내용 (20점)	작품성(예술성)	작품 자체가 갖는 예술적 가치 확보 여부	10
	완성도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협약기간 내 제작완성 가능성)	10
기대성과 (40점)	투자매력도	투자유치 가능성	10
	대중적 성과	국내외 영화제, 공모전 등 수상 가능성	20
	목표 타당성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10
참여인력 (10점)	참여인력 참여율	과제에 적절한 인력구성 여부와 참여율 적정성	5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애니메이션 제작) 수행경험 여부	5
수행기관 (24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7
	기관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여부	12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정보 조회 결과	5
ESG (6점)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2
	지역기업(계량)	주관기관 지역기업 여부(본사 기준) ※ 신청일 ~ 협약종료까지 주관기관의 참여인력(인건비 편성인력) 중 30% 이상이 지역 소재 본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부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3점	3
	표준계약서(계량)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제출 1점, 미제출 0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최근 3년간): 제출 1점, 미제출 0점	1
합 계			100

3)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심의방법) 종합점수(=서면평가 40%+발표평가 60%)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등)
- (심의결과) 종합심의(수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등)에 따라 총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 확정하여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협약대상자 확정하며, 협약 포기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종합점수(=서면 40%+발표 60%) 동점 처리기준 및 종합심의 유의사항】

○ 종합점수 동점 처리기준

-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과제에게 우선순위 부여
- 발표점수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평가 기준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평가 구분지표에서 고득점한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 구분지표 합계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가장 높은 세부지표에서 고득점한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종합심의 유의사항

- 종합심의에 따라 협약대상자는 신청 사업비 조정(삭감 등)될 수 있으며, 수행계획서 등 수정을 요청받을 수 있음

- 사업비 조정 후 프로젝트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해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지원금 지급

- 협약 결과에 따라 지원금 분할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지급 방식(횟수, 금액 등)은 협약 시 추후 안내 예정이며, 월 단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차 지원금 :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 지급(지원금의 30%)

지원요건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8. 애니메이션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로 지정되지 않은 프로젝트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인 프로젝트이어야 하고, 작완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함)
9. 해당 지원과제는 접수 마감일 기준 국내·외 방영이 50% 이상인 프로젝트
10. 협약일 기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애니메이션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자

문의처

○ 사업문의

- * 다량의 문의 전화로 담당자와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화문의 전 아래 링크에 연결된 안내페이지 숙지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061-900-6415, purple@kocca.kr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지원공고 임시 안내페이지】

○ 접속하기 : [안내페이지 이동하기\(클릭 이동\)](#)

○ 안내페이지 이용안내

- [지원공고 모아보기]를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지원공고를 확인하세요.
- [FAQ]를 통해 애니메이션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 [가점대상 찾아보기]를 통해 해당사항을 확인하세요.

○ 유의사항

- 해당 페이지는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지원공고> 안내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임시페이지입니다.
 - * 임시 안내페이지는 25애니메이션제작지원 공고기간 동안만 운영합니다.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지원공고>의 접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페이지 운영 또한 종료합니다.
 - 공고 관련 해석상에 차이가 발생 시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kr) > 알림마당 > 지원공고]에 게시 된 각 사업별 자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 해당 페이지 내용에 대한 수정/복제/편집 등의 2차 가공이 엄격히 금지되며, 임의 사용 시 법적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사업설명회】

○ (일시) 2025.02.27.(목) 14:15 ~

○ (장소) 광화문 CKL 16층 컨퍼런스 룸

- * (주소)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 * 주차 지원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신청) [사전 신청하기\(클릭 이동\)](#)

- * 2025.02.26.(수) ~13:00까지 링크를 통해 사전 신청 바랍니다.
- * 사업설명회에서 시간관계 상 대면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사전 신청을 통해 취합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 * 단순 업무 일정(평가 일정, 결과 안내 등)에 대한 문의는 지양 바랍니다.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용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용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 콘텐츠금융제도(투자·용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신청/평가]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에서 0점 처리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모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시행하는 선정절차에 동의하며 성실하게 임해야 함
- 공모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선정결과에 대하여 별도 이의신청 절차가 없으며 이의신청이 불가능함을 숙지하여야 함
- 공모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타 지원 과제에 대한 근거 없는 공개적 비방 및 비난 등은 삼가길 바람

[협약]

-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안내받은 기한 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수행]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와 연계하여 평가 예정임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